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0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7일
발 의 자: 김 경, 김기덕, 김성준,
박승진, 아이수루, 유정희,
정준호, 최재란, 한 신,
홍국표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2023년,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 수단에서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확장하는 '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·방전 서비스'를 실증하기로 하고,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.
- 이에 국회는 최근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해(시행 2026. 1. 1.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·방전 가능 자동차와 설비를 개발·보급 확장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한바,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서울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(안 제7조의6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6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 시장은 양방향 충전(충전과 방전을 말한다)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7조의6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 시장은 양방향 충전(충전과 방전을 말한다)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6 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6 (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)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 및 대상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